

「202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의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해소하고자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4월 20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2년 4월 20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성장기업에 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참여근로자 107명 내외 (기업 당 최대 3명)
-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II 신청 자격

- 참여 기업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뿌리기업 중 ‘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성장기업]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 ①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 ②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 ③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업
 - ④ 신성장사업군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가 반도체, 항공, 바이오, 로봇 분야인 뿌리기업
- ※ 각 항목의 산출근거는 공고문 「IV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참고

○ 참여 근로자

- 지원사업 선정이후 ‘참여근로자’ 조건에 해당되는 신규채용자

[참여근로자] 아래 조건 모두 해당

- ❶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서비스 등록자(워크넷 등록 구직자 및 재직자)로 5년 이내 뿌리산업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및 재직자
- ❷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참여 근로자의 주민등록 거주는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 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 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뿌리산업분야 경력증빙은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장 채용' 참고

○ 참여 제외대상

1.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 ▶ 2022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 ▶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2.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6.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8. 결산일 기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9.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 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0.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1.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 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지원 내용

○ 참여근로자를 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장려금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채용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급 시점
참여근로자	월 200만원	최대 3개월	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마다 지급(최대 3회)
	(인센티브)100만원	1개월	채용 후 5개월 만근 시 1회 지급
참여근로자 1명 당 최대 700만원 지원 (5개월 만근 시)			

[장려금 유의사항]

- ① 장려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한도(총 3명) 인원내 포함
- ② 참여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채용은 당초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2주 전·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대체채용은 지원한도 인원 1명당 1회에 한함
- ③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대체채용 불가
- ④ 참여기업은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최소 1명 이상의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 채용하는 기업은 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④ 2022년 11월 30일 이후 장려금 신청은 2023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후지급(예정)
※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및 '제4장 지원내용' 참고

VI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접수기간 : 2022년 4월 20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신청 및 선정절차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에 부합할 시 통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자 격 심 사	성장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 - 매출액 증소율 :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 증가율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 성장 산업군 : 항공(업종 분류번호 313으로 시작), 반도체(업종 분류번호 261으로 시작 또는 29271), 바이오(업종 분류번호 20495), 로봇(업종분류번호 29280)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표창
	뿌리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에 포함되는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합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기준
	기업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인천이면 적합
	국세 및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4대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4대 사회 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 서류심사

- 정량평가로 총합 점수 60점 이상일 시 합격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근로 복지 부문 (45)	고용 안정 (25)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인원 중 가장 최근 입사자 2인 이행-15점, 위반-탈락		
		장기 근속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기준 10% 이상 6%이상~10%미만 6% 이하 10점 7점 4점		
	복지 후생 (20)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의무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여부 - 2021년 교육훈련 관련 자료 실시-10점, 미실시-0점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 등 - 복지시설 사진 또는 영상 (화장실 제외) 3개 이상 2개 1개 10점 7점 4점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기술역량 부분 (35)	뿌리 기술 (25)	핵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5점, 무-0점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관련 연구소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가입업체 - INO-BIZ(기술혁신형)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0점, 무-0점		
	품질 인증 (10)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관련 인증 보유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기술개발 제품 인증 - KS, JIS, UL, CE, C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6시그마 등 시스템인증 - 특허권,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 보유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3개 이상	2개	1개
			10점	7점	4점			
경영 부분 (20)	성장성 (20)	고용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2020년 12월 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대비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10% 이상	6%이상~10%미만	6% 미만
		매출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최근년도 매출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자료(이익계산서) 기준 			10% 이상	6%이상~10%미만	6% 미만
가점(6) (중복가능)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가점 :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2020~2021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가점 : 3점			
합 계		100점 (가점 6점)						

○ 심의평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하며 평균 60점 이상 시 최종선정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 (100)	일자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의 필요성 - 신규채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한 내용 평가 (0~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활용의 적정성 - 위기근로자의 업무수행 구체성 및 요구되는 전문성의 적합여부 평가 (0~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지속성 - 근로환경, 노사관계, 복지수준, 일 생활균형 등 고용유지노력 평가 (0~25) 	25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성장가능성 - 시장경쟁력, 기술력 등 기업의 성장성 (0~25) 	25
총 계			100

○ 신청기업 제출서류

순번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 번호
1	필수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
2	필수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및 증빙서류	2
3	필수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격 체크리스트	3
4	필수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기업정보활용 및 사업참여동의서	4
5	필수	구인신청서	-
6	필수	근로계약서 사본(최근 채용인원 2인)	-
7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필수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19, '20, '21)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 2019년 검색기간 : '19.12.31 ~ '19.12.31	-
9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	-
10	필수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19, '20, '21) (부속명세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사업자는 '18, '19, '20 재무제표 대체가능	-
11	필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12	필수	뿌리기업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
13	선택	가점 해당서류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단, 인증기간(유효기간) 내의 가점 서류만 인정	-

* 별도 서식파일은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함

V 문의사항

-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연 락 처 : (Tel) 032-260-0695 (E-mail) jspark@itp.or.kr
-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